

『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10일

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최 윤 구

나. 제안이유

「아동복지법」의 변경으로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사업비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아동복지법」 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 정비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따른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
 - 안 제8조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 마련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「아동복지법」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사업비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「아동복지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된 관계법령 등을 수정하였고,
- 안 제8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2011. 4월 제정한 이후 변경된 조문의 용어 및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